

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 위임사항

2012년 10월 12일, 개정

북태평양에서 서식하고 있는 소하성개체군의 보존을 인식하는 것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,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:

- 소하성개체군과 적절한 경우 생태학적 관련 종 및 해양 생태계의 상태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;
- 해양에 서식하는 소하성개체군 및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련된 과학적 정보의 습득, 분석 및 전파를 촉진;
- 해양에 서식하는 소하성개체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; 그리고
- 해양에 서식하는 소하성개체군의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수립.

이러한 목적들은 세부적으로 NPAFC 과학 계획에 따라 달성된다.

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협약 제7, 8 및 9조에 준한다. 기타 사항도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다. 특히 소위원회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:

과학적 지식의 습득

- (1) 협약 제7조 6항에 따라 제안된 과학적 연구계획을 검토;
- (2)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 위원회를 설치;
- (3) 과학적 자료의 수집 및 교환과 소하성어종의 표본 수집을 검토 및 조정;
- (4) 협약수역 및 인접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이 기원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조정 및 평가;
- (5) 위원회가 지정한 관심 대상 종과 관련된 포획에 있어서 부수 어획의 영향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견해의 제공을 보장;
- (6) 위원회가 관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생태 관련 종을 확인;
- (7) 소하성어족자원 및 적절한 경우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 어획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적절한 오피서버 프로그램을 개발;

- (8) 과학 교류, 세미나, 워크숍,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을 조정;
- (9) 발행하기 위해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발행할 다른 보고서에 관한 권고사항 작성;
- (10)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.

보고서와 권고사항들을 위원회에 제출위원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 작성

- (12) 협약수역 안의 소하성어류에 대한 부수적 포획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위원회에 권고;
- (13) 협약수역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대상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위원회에 권고;
- (14)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적 자문을 포함하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해 PICES 및 다른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;
- (15)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에 관한 과학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를 초청하도록 위원회에 권고.